

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·단체의 범위(제60조제2항 관련)

위탁업무	위탁 대상기관·단체의 범위
1.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·지원	지원기관
2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	지원기관
3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	지원기관
	스마트도시협회
	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
4.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	「해외건설 촉진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
	국토연구원
5.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	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 "한국건설기술연구원"이라 한다)
	스마트도시협회
	한국토지주택공사
6.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	한국수자원공사
	지원기관
	스마트도시협회
	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
	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	한국건설기술연구원

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
	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	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
	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
	「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」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
	한국수자원공사
	한국토지주택공사